

1. 개정이유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전검토 대상·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검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31조의2)

- (대상) 기존에 인·허가 받은 원자로와 안전성 입증방법 등이 다른 신규 원자로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서, 설계사항 상세보고서
- (검토계획) 사전검토 대상·일정·조직 등을 검토계획에 포함시키고, 검토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 시 신청인 의견 청취 가능

나. 사전검토 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109호의2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 등) ① 법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기존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비교하여 안전특성 또는 안전성 입증방법 등이 다른 신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이 조에서 “원자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은 사전검토의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1. 설계개념 및 주요 설계특성
2. 안전성 입증방법 및 핵심 안전 기능
3. 적용 예정 기술기준의 목록 및 그 적용 가능성
4. 그 밖에 원자로 등의 설계와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0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상세보고서는 제2호마목의 제출계획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법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 신청계획

다. 원자로 등의 설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와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라. 원자로 등의 설계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격과 경험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 요청서

가. 원자로 등의 설계현황 및 계획

나. 원자로 등의 주요 설계특성

다. 원자로 등의 안전계통 구성 및 기능

라. 사전검토 요청 범위 및 목적

마. 사전검토를 받고자 하는 설계사항 및 제출계획

바. 사전검토를 받고자 하는 일정

3. 제2호마목에 따른 설계사항에 대한 상세보고서

④ 법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방법은 서면검토, 회의를 통해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질의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검토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사전검토 대상 및 목적
2. 사전검토 수행 일정
3. 사전검토 수행 조직
4. 사전검토 수행 방법
5. 그 밖에 사전검토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0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신청 내용	원자로의 명칭			
	원자로의 종류·열출력·설계자 및 설계자의 국적			
	원자로의 활용목적			
	사전검토 희망 일정			

「원자력안전법」 제10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의2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전검토 요청서 1부 3. 설계사항에 관한 상세보고서(제131조의2제3항제2호마목의 제출계획에 따름)	수수료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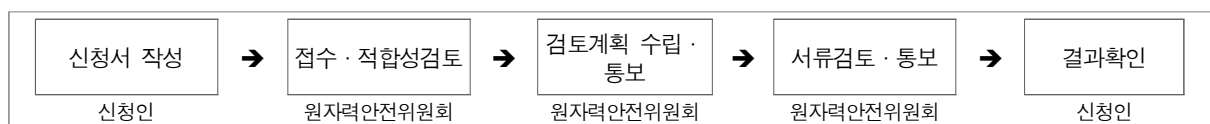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1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 등) ① 법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기존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비교하여 안전특성 또는 안전성 입증방법 등이 다른 신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이 조에서 “원자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로 한다.</u> <u>② 법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은 사전검토의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u> <u>1. 설계개념 및 주요 설계특성</u> <u>2. 안전성 입증방법 및 핵심 안전 기능</u> <u>3. 적용 예정 기술기준의 목록 및 그 적용 가능성</u> <u>4. 그 밖에 원자로 등의 설계와</u>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0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상세보고서는 제2호마목의 제출계획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법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 신청계획

다. 원자로 등의 설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와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라. 원자로 등의 설계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격과 경험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 요청서

가. 원자로 등의 설계현황 및
계획

나. 원자로 등의 주요 설계특
성

다. 원자로 등의 안전계통 구
성 및 기능

라. 사전검토 요청 범위 및 목
적

마. 사전검토를 받고자 하는
설계사항 및 제출계획

바. 사전검토를 받고자 하는
일정

3. 제2호마목에 따른 설계사항
에 대한 상세보고서

④ 법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방법은 서면검토, 회
의를 통해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질의 또는 추가 자
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검토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사전검토 대상 및 목적

2. 사전검토 수행 일정

3. 사전검토 수행 조직

4. 사전검토 수행 방법

5. 그 밖에 사전검토 수행에 필

요한 사항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